



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

[시행 2014.10.20.] [서울특별시조례 제5746호, 2014.10.20., 일부개정]

서울특별시 (조직담당관) 02-2133-6748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 제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7.26., 2014.10.20>

제2조(기금) ① 서울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. <개정 2012.7.26.>

② 제1항의 기금은 서울특별시(자치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.

제3조(출연금) 서울특별시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.

제3조의2(이사의 추천 및 임명) ①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서울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학계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, 각종 학회 등
2. 산업계 : 서울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
3. 기타 : 법조계, 언론계, 연구계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 등

② 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10.20.]

제4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·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0.20.>

1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
2.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
3.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
4.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

② 연구원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·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(사업계획 등 승인)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6조(결산서 제출)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고, 검사 등)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엄수의 의무)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이나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2.7.26.>

제9조(시행규칙) 기금 및 출연금의 운용관리,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7.26.>

부칙 <제5746호, 2014.10.20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의 추천 및 임명에 대한 적용례)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